

## 재활용실적인정 세부기준

지난 11월 2일 재활용사업자 간담회에서 환경공단이 제시한 '재활용실적인정 세부기준'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한다.

### 추진근거

환경부 예규('11.3.11) 제19조 제2항 및 제68조 제1항내지 제3항

#### 제19조(재활용실적인정 자료)

- ① 재활용실적인정대상자는 재활용실적을 인정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.
  1. 재활용의무대상 제품·포장재의 **회수실적에 관한 자료**
  2.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·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(재생원료 및 재활용제품의 거래·납품자료, 생산·수출실적 등을 말한다)
- ② 회수·재활용실적 증빙자료 중 계량대를 임의 조작하여 발행한 **계량증명서, 수기로 작성한 계량 증명서는 불인정한다.** 다만, 2010년까지의 재활용실적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금융거래 내역 제출시 인정할 수 있다.

#### 제68조(허위 회수·재활용실적이 적발된 경우)

- ① 재활용의무이행결과 조사·확인시 허위 회수·재활용실적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한

사유가 없는 이상 재활용의무이행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한다.

- ② 허위 회수·재활용실적이 적발된 비율(허위 회수·재활용실적량 ÷ 의무이행결과보고서상 회수·재활용실적량)에 따른 자격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1. 1% 미만 : 주의
  2. 1% ~ 5% 미만 : 경고(2회이상 경고시 1년간 자격제한하며, 경고 처분을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때 경고 처분의 효력은 소멸)
  3. 5% 이상 ~ 25% 미만 : 1년간 자격제한
  4. 25% 이상 : 2년간 자격제한
- ③ 공단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자격이 제한된 자가 포함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승인하지 않는다. 다만, 자격제한 시작일 이전에 승인된 의무이행계획서는 자격제한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유지한다.

※ 허위 회수·재활용실적에 대한 자격제한 규정은 "환경부 자원재활용과-1224(2012.6.27)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적용관련 검토결과 알림"에 의거, 근거규정을 재촉법에 신설하는 등 새로운 방안을 강구 예정

## 재활용실적 인정을 위한 계량증명서 인정범위

### 적용원칙

임의조작, 수기작성, 1도계량 불인정

- 적용시기 : 2011년부터

※ "환경부 자원재활용과-1224(2012.6.27)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적용관련 검토결과 알림"에 의거, '11.9.11일부터 적용

- 계량프로그램을 통한 자동(실시간) 계량을 원칙으로 함

### 재활용 실적 인정세부기준

- 임의조작 : 계량증명서 중 재활용실적 인정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수기재사항으로 지정하여 수동조작을 통한 사후 입력 등의 임의조작 불가
  - ※ 필수기재사항 : 계량표 일련번호, 계량일시, 차량번호, 총중량, 공차중량
- 수기작성 : 필수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수기작성 실적 불인정
- 1도계량 : 지자체·공인계량소 이외 1도계량 불인정

### 자주 묻는 질문

#### 꼭 매입·매출품을 계근대로 무게를 재야 하나요?

- ▶ 매입·매출자료 및 중량에 관한 자료는 실적 인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객관적 자료로 정확하고 공신력 있어야 합니다. 따라서 **계량대를 통한 자동계량을 원칙으로** 하고 있는 것입니다.
- ▶ 다만 EPS·PSP의 경우, 중량에 비해 부피가 큰 특수성으로 인해 **매입에 관한 계량표는 생략할 수** 있도록 한 것이며 이 경우라도 **최소한 매출에 관한 계량표는 구비되어야** 합니다.
- ▶ 경제적, 행정적 부담이 일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, **재활용시장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양지 부탁드립니다.**